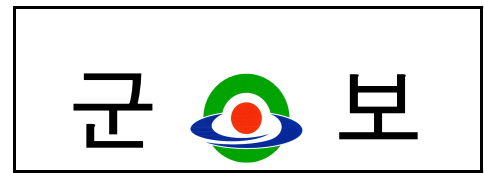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171호 2019. 6 3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19-28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6. 3.

예 천 군 수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774외 18건

종전 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 사유	도로명주소 부 여 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
별 도 열 략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(☎054-650-6924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